

#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21. 2. 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‘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’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추진개요

- 사 업 명 :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
- 사 업 자 :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
- 사업기간 : 2021년 5월 ~ 11월(7개월간)
- 발전용량 : 19.9kw
- 사 업 비 : 45,000천원(군 40,500 자부담 4,500)
- 연간수익 : 5,000천원/정도

※ 수익금 사용 : 김용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(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)

### 나. 추진사항

- 2020. 10. : 국비 공모사업 선정

### 다. 재산의 표시

위 치	면 적	태 양 광 설치면적	용 량	사용허가신청자
거창읍 양평리 338-5(주차장)	812㎡	100㎡	19.9kw	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

### 라. 향후 추진계획

- 2021. 5 :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및 원상복구 계획 접수(환경과)  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

○ 2021. 11. : 공사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(경제교통과)

### 3. 관련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」 제26조
-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 제12조 제4항

### 4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주소 :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38-5(지목 : 주차장 )



<설치사례>

# 관 련 법 령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7. 7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## 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

제12조(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④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 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그 동의 절차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다

## 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

제17조(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